

# 2016 미얀마 조세 FAQ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JIPYONG** 법무법인 지평

## 목 차

<b>1. 법인세</b> .....	<b>5</b>
(1)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부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5
(2) 외국회사와 내국회사, 합작기업의 법인세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5
(3) 현재 미얀마 내에 회사법, 미얀마투자법,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서 설립할 경우 어떠한 법인세 혜택이 있는지 및 각 법률마다 세제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6
(4) 현재 미얀마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7
(5) 소득이 없는 연락(대표)사무소의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8
(6) 미얀마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허가를 받으면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는 데, 합작투자 시에도 혜택이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8
(7) 자산양도세(Capital Gains Tax)는 무엇인가요? .....	8
(8) 법인세에 가산세가 붙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9
(9) 법인세에 관련한 최근 이슈 및 변화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9
 <b>2. 개인 소득세</b> .....	 <b>10</b>
(1) 소득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납부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0
(2)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분류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11
(3)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11
(4) 외국인의 소득세와 현지인 소득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1
(5) 미얀마에서 단기간 근무(과세기간 동안 182일 이하 거주)를 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12
(6) 소득세 세금계산 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2
(7) 업종별로 소득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13
(8) 개인소득세의 징수가 실제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13
(9) 소득세 공제 및 환급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13
(10)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될 경우 한국에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14

- (11) 미얀마에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뒤 한국에서도 소득에 관한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15
- (12) 소득세에 가산세가 붙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5
- (13) 미얀마 근무 후 한국 귀국 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세 항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16

**3. 상업세 ..... 17**

- (1) 상업세의 내용과 성격이 궁금합니다. .... 17
- (2) 상업세 과세대상, 과세기준, 납부방식 및 납부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7
- (3) 매입상업세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17
- (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업세 과세 방침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 18
- (5) 상업세율과 상업세 면제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8
- (6) 상업세 세액 산출 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9
- (7) 상업세와 관련한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 20
- (8) 미얀마 내에서 연락사무소 운영시 상업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
- (9)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20

**4. 관세 ..... 21**

- (1) 미얀마 내에서 제품을 수입할 경우 HS code 등 관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21
- (2) 미얀마 내 ASEAN, FTA 특혜관세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21
- (3) 관세 환급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21
- (4)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받아 미얀마에서 임가공하여 다시 수출할 경우 미얀마에서의 관세가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22

**5. 원천징수세 ..... 23**

- (1) 대금 지급(사업자의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제외) 시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23
- (2) 원천징수 세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 23

<b>6. 인지세</b> .....	<b>25</b>
(1) 인지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25
(2) 인지세는 언제 납부하는 것이지요? .....	25
(3) 인지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26
 <b>7. 기타</b> .....	 <b>27</b>
(1) 미얀마에서 외국 법인들이 부담하는 조세 의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27
(2) 주요 조세별로 신고 및 납부기간이 궁금합니다. ....	28
(3) 구체적인 세금문의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8
(4) 미얀마투자법 또는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투자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어떤 조세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29
(5) 가산세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32
(6) 미얀마에서 과실송금을 할 수 있는지 및 이에 대한 관련 규제를 알고 싶습니다. ....	32
(7)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33
 <b>별첨 1 - 상업세가 면제되는 재화</b> .....	 <b>34</b>
<b>별첨 2 - 상업세가 면제되는 서비스</b> .....	<b>37</b>
<b>별첨 3 - 특별재화 (Special Goods)</b> .....	<b>38</b>

## 1 법인세

**Q1**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부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가) 과세대상

미얀마 소득세법에 따르면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발생지역과는 무관하게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 전부입니다. 다만, 미얀마투자법에 따라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MIC”)의 투자허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의 경우 미얀마 세법상 거주자인 기업으로 구분되지만 해당 회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나) 과세표준

미얀마 소득세법상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총 수익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으로 합니다.

### (다) 납부방식

미얀마법상 소득세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매 분기별(6월, 9월 12월, 3월말)로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까지 추정 법인세를 예납하고, 6월 30일까지 확정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외국회사와 내국회사, 합작기업의 법인세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법인세율은 (i)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100% 외국인 지분의 외국회사, 합작회사, 내국회사 및 외국지점(Foreign Branch) (ii) 미얀마투자법에 따라 MIC의 투자허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 (iii)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투자허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 (iv) 특별 허가에 따라 미얀마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외국기업 모두에

게 25%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회사법상 외국지점(Foreign Branch)은 외국회사가 거주자로 취급되는 것과 달리 비거주자로 취급되기는 하나 2015년부터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기존에 3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었음).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법인설립 형태	법인세율
회사법 및 특별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25%
미얀마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5%
특별 허가에 따라 미얀마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외국 기업	25%
외국지점(Branch Office)	25%

한편, 미얀마투자법 및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됩니다. 구체적인 감면내용 대해서는 아래 질의사항(3)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3** 현재 미얀마 내에 회사법, 미얀마투자법,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서 설립할 경우 어떠한 법인세 혜택이 있는지 및 각 법률마다 세제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법인세 감면 및 기타 내구세/관세 감면 혜택은 미얀마투자법 및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투자허가(또는 양여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설립된 법인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미얀마투자법에 따라 MIC의 투자허가나 양여허가를 받고 설립된 법인의 경우 투자허가(또는 양여허가)의 개별적인 내용에 따라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게 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 5년 또는 7년간 법인세가 면제됩니다(미얀마투자법 제 75조). 현행 미얀마투자법(2016년 10월 18일 발효) 발효 이전에는 MIC 투자허가를 받으면 일률적으로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었는데, 미얀마 정부는 투자지역 및 투자사업의 종류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에 차등을 두기 위하여 위와 같이 3년/5년/7년으로 감면

혜택의 기간을 나누고, 혜택의 대상이 되는 “투자지역 및 투자사업의 종류”는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2016년 12월 현재 위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중이며 2017년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각 투자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특별경제구역법은 2016년 미얀마투자법의 제정과는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구역	내용(특별경제구역법 관련 조항)
Free Zone 투자자 Free Zone Business 투자자	첫 7년 법인세 100% 면제(제32조(a)항) 두 번째 5년 법인세 50% 면제(제32조(c)항) 세 번째 5년 재투자분의 50% 면제(제32조(d)항)
Promotion Zone 투자자 기타경제구역 투자자	첫 5년 법인세 100% 면제(제32조(b)항) 두 번째 5년 법인세 50% 면제(제32조(c)항) 세 번째 5년 재투자분의 50% 면제(제32조(d)항)
경제특구 개발자(Developer)	첫 8년 법인세 100% 면제(제40조(a)항) 두 번째 5년 법인세 50% 면제(제40조(b)항) 세 번째 5년 재투자분의 50% 면제(제40조(c)항)

참고로, 위 구역 구분에서 Free Zone은 수출전용 구역으로서 우리나라의 보세구역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고, Promotion Zone은 수출뿐만 아니라 미얀마 내 내수 시장 진출도 가능한 구역입니다.

#### Q4 현재 미얀마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법인세가 면제 혹은 감면되는 법인은 (비영리단체 등을 제외하고) 앞서 설명한 미얀마투자법 혹은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투자허가(또는 양어허가)를 취득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자(법인)별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분야(비영리단체의 사업은 제외함)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Q5 소득이 없는 연락(대표)사무소의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대표사무소에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 신고 시에 “소득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에서는 대표사무소도 회사법에 따라 Foreign Branch Office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는데, 미얀마에서 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모든 법인(외국회사, 내국인회사, 외국지점 및 대표사무소 포함)은 매년 6월 30일까지 이전 과세연도(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를 구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표사무소의 업무활동 변경 등으로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지점이나 외국회사와 마찬가지로) 매 분기마다 법인세를 예납하고(매년 3월 31일 이전) 법인세 확정신고(매년 6월 30일 이전)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6 미얀마투자법 따라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허가를 받으면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는 데, 합작투자 시에도 혜택이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작회사의 형태로 MIC로부터 투자허가(또는 양여허가)를 받으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허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Q7 자산양도세(Capital Gains Tax)는 무엇인가요?**

자산양도세는 부동산, 설비자산, 자동차, 주식 등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양도차익의 10%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스 및 석유업 관련 자본이득세율은 40% ~ 50%입니다. 참고로 2015년 세법 개정 이전에는 비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가령 비거주자가 미얀마내 법인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 이에 대하여 40%가 부과되었으나 2015년 개정으로 10%로 낮춰졌습니다.



**Q8 법인세에 가산세가 붙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산세는, ① 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세액의 10%, ② 과소예납의 경우 과소납부액의 10%, ③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9 법인세에 관련한 최근 이슈 및 변화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구세청은 구세청 설립 후 최초로 2014년 3월 법인세 미신고자 8,220개사의 명단을 공개 하였는데, 세수 확보와 투명한 조세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구세청은 내부적으로도 전체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상업세와 관련하여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정확하게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향후 법인세 납부 및 신고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개인 소득세

### Q1 소득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납부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가)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거주 미얀마인, 거주자인 외국인이 외환 형태로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소득발생지역과는 무관하게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외환 소득 전부이며(소득세법 제3조 (n)항 (i) 및 제15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얀마 내의 원천소득입니다. 다만 비거주 외국인이 미얀마에서 소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미얀마에서의 소득활동에 기초하여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미얀마 내의 원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구세청의 해석입니다.

#### (나) 과세표준

미얀마인 및 거주자인 외국인의 과세구간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소득공제 후)		세율
	From (Kyats)	To (Kyats)	
1	1	2,000,000	0 %
2	2,000,001	5,000,000	5 %
3	5,000,001	10,000,000	10 %
4	10,000,001	20,000,000	15 %
5	20,000,001	30,000,000	20 %
6	30,000,001 이상		25 %

#### (다) 납부방식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지급 이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6월 30일까지 소득 신고를 한 후 확정세액과 비교하여 이에 대해서 추징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한편, 회사가 위치한 세무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분기별이나 연간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을 관

할 세무서가 허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원천징수업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일 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Q2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분류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미얀마 세법상 거주 외국인이란 ① 한 과세연도 동안에 미얀마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연속한 기간일 필요 없음)인 개인, ② 미얀마 회사법 또는 기타 관련 미얀마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중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주주가 외국인인 회사, ③ 회사 이외의 조합 중 그 구성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외국인이고 해당 조합 관련 지배·운영·의사 결정 절차가 전적으로 미얀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k)항). 위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됩니다(소득세법 제3조 (l)항).

요약하면, 개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미얀마에 체류한 경우에는 거주자, 182일 이하를 거주한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모두 거주자가 됩니다. 외국에 설립된 회사는 모두 비거주자입니다.

## Q3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얀마 내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연방조세법과 소득세법입니다.

## Q4 외국인의 소득세와 현지인 소득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 거주자와 현지인의 소득세 및 자산양도세에는 차이가 없으나, 외국인 비거주자와 현지인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전세계소득의 25%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미얀마에서의 소득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25%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그리고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경우 공히 자산양도이익의 10%가 자산양도세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으나 비거주자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가령 비거주자인 외국인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할 때에 기본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Q5 미얀마에서 단기간 근무(과세기간 동안 182일 이하 거주)를 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방조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도 미얀마의 소득활동을 원천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미얀마 구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에 설립된) 회사가 해당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6 소득세 세금계산 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 과세연도 동안 일정한 소득공제 이후의 소득이 4,800,000 짜트 이상인 외국인 거주자와 미얀마 내국인은 다음의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율은 정율로 25%입니다.

	과세표준(소득공제 후)		세율
	From (Kyats)	To (Kyats)	
1	1	2,000,000	0 %
2	2,000,001	5,000,000	5 %
3	5,000,001	10,000,000	10 %
4	10,000,001	20,000,000	15 %
5	20,000,001	30,000,000	20 %
6	30,000,001 이상		25 %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9)항을 참고 하십시오.

### Q7 업종별로 소득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소득은 업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합산한 후에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업종별로 소득세가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산양도세(양도소득의 10%)과 임대료(임대수익의 10%)는 다른 소득과는 별도로 산정(급여 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음)됩니다.

### Q8 개인소득세의 징수가 실제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나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이 자진하여 납세해야 합니다. 실제 조세 징수는 구세청의 과세정책 집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향후 미얀마 내의 상거래가 보다 투명해진다면 조세 징수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기존에는 미얀마인 개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 등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인지세법 시행 강화에 따라 많은 임차인들(특히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들)이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등록 과정에서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구세청에 공개되어 과세 관청이 임대인의 임대소득을 추적하기가 더욱 용이해지면서 임대 소득세가 징수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Q9 소득세 공제 및 환급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얀마에도 소득공제 및 소득세 환급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주요 소득공제의 유형 및 공제율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공제의 유형	공제율/공제금액
기본 공제	연간 소득의 20%. 단, 총 공제액은 10,000,000 짜트를 초과할 수 없음.
배우자 공제	500,000 짜트 (단,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한함)
자녀 공제	1 인당 500,000 짜트 (단,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18세 미만이거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의 자녀에 한함)
부모 공제	1 인당 1,000,000 짜트 (단, 동거 요건 있음)
사회보장기금	사회보장기금 적립액 전액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자료를 구세청에 제출하거나 세무공무원이 납부된 세금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초과한다고 확인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구세청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환급 절차가 까다롭고 실제 환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Q10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될 경우 한국에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거주자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에 따라 한국의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대한민국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의 소득(즉 한국 구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2항).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구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 둔 개인은 말하며(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미얀마 세법상 거주 외국인이란 ① 한 과세연도 동안에 미얀마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연속한 기간일 필요 없음)인 개인을 뜻합니다. 한편,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한국의 거주자인 동시에 미얀마 세법에 따라 미얀마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구적 등의 기준에 따라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한국과 미얀마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납세의무자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 다른 사정과 함께 귀국이라는 사정이 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귀국 후에는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귀국하기 전까지 거주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귀국 전부터 계속하여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였다면 귀국 전부터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귀국 이후부터 한국의 거주자가 된다면, 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전 세계 과세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거주자가 되기 전(귀국 전)에 발행한 외국소득(미얀마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습니다.

### Q11 미얀마에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뒤 한국에서도 소득에 관한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납세의무자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미얀마 소득에 대하여 미얀마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한 후 한국에서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증빙 등(사업소득에 관한 장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미얀마에서 미얀마 세법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는 일정 범위 내에서 한국의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납세의무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미얀마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Q12 소득세에 가산세가 붙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미얀마 소득세는, ① 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세액의 10%, ② 과소예납의 경우 과소납부액의 10%, ③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13 미얀마 근무 후 한국 귀국 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세 항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거주자는 외국 파견 근로에서 얻은 근로소득을 한국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귀국하면 외국 근로소득에 신고서 및 납부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그 소득 및 외국납부세액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상업세

#### Q1 상업세의 내용과 성격이 궁금합니다.

상업세란 미얀마 국내에서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재화의 수입 시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소비세 또는 매출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 Q2 상업세 과세대상, 과세기준, 납부방식 및 납부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가)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

상업세의 과세대상은 국내에서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및 외국에서 수입된 재화입니다.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은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재화의 수입시에는 수입품의 양륙비 포함 구매원가(landed cost)를 기준으로 상업세가 부과됩니다. 상업세율은 재화 및 용역의 유형에 따라 연방조세법, 상업세법 및 상업세법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나) 납부방식 및 납부시기

납세의무자는 먼저 관할 세무서에 상업세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업세는 매월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1개월 간의 매출에 해당하는 상업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 분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상업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상업세 신고서는 과세연도 말부터 3개월(6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Q3 매입상업세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과세관청은 다음 항목에 대하여 매입상업세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자(Manufacturer)가 제품 제조를 위하여 구매한 원재료 및 반제품에 대한 상업세 납부액 및 무역업자가 상품 매입 시에 납부한 상업세
- 용역공급자(Service Provider): 대상 매입이 용역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상업세. 가령 직접 외주 비용 등에 대한 매입상업세액은 공제 가능함(최근 시공회사들이 외주사에 지급한 대금에 부가한 매입상업세액 공제 사례 있음)
- 단, 특별 관리 품목 (담배, 주류, 보석 등) 제외

다만, 상업세법 및 연방조세법과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적정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매입상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무자료 거래나 용역/제품 공급자가 상업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역/제품 공급자가 매출상업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상업세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Q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업세 과세 방침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미얀마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업세 납부 방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Q5 상업세율과 상업세 면제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미얀마의 현행 상업세율은 2016년 4월 1일 발효된 연방조세법(2016년 1월 25일 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조세법이 정하고 있는 상업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재화 및 용역(서비스)의 경우 공급가액에 5%의 상업세가 부과됩니다. 면세 대상 재화의 공급은 생필품, 농산물, 의료, 교육, 군사, 외교, 임가공용역 제공을 위한 원재료 수입 등 86개 항목이고(별첨 1 참조), 면세 대상 용역(서비스)의 공급은 생명보험, 생명보험, 소액금융,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29개 항목입니다(별첨 2 참조).

상업세율의 상세 내역과 상업세 면제항목은 아래의 표 및 별첨을 참고하십시오.

상업세 구분	상업세율
<b>재화</b>	
• 생필품, 농산물, 의료, 교육, 군사, 외교, 임가공용역 제공을 위한 원재료 수입 등 86개 면세 재화 (별첨 1 참조)	0%
• 재화의 수출시 (다만, 전력 8%, 원유 5%)	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5%
<b>서비스</b>	
• 생명보험, 소액금융,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29개 면세 서비스 (별첨 2 참조)	0%
• 국내여객항공운송업	3%
• 건물 분양	3%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서비스	5%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미얀마는 법률상 단어의 의미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구세청에서 다소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구세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참고로 연간 매출이 20,000,000 짜트 이하인 경우에는 상업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Q6 상업세 세액 산출 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미얀마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익금에 대한 상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액에 해당 상업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수입된 재화의 경우 상업세 기준 가액(CIF 가액 + 하역료 + 관세)에 해당 상업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한편 특별재화(담배, 주류, 티크, 옥/루비, 각종 차량, 가솔린, 천연가스 등 별첨 3 참조)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액에 특별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도 상업세가 부과됩니다.

### Q7 상업세와 관련한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개정 상업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납 상업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아래의 사유마다 개별적이고 중첩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i) 사업자등록(Commercial Tax Registration)을 하지 않은 경우(10%)
- (ii) 사업 개시 통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10%)
- (iii) 규정된 기간(월, 분기, 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총 30%)
- (iv)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10%), 납세에 대한 조사 출두 통지 준수를 못한 경우(10%)
- (v) 정해진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확정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10%)
- (vi) 매출 관련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해당 상업세의 10%)
- (vii) 매출 관련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해당 상업세의 100%)

### Q8 미얀마 내에서 연락사무소 운영시 상업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락사무소 또는 대표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및 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Q9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 미얀마 정부는 World Bank, IMF 등 국제기관의 자문을 통해 부가가치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고 2018년 또는 2019년 정도에 상업세를 대체하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4 관세

**Q1** 미얀마 내에서 제품을 수입할 경우 HS code 등 관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미얀마 내에서 제품을 수입할 경우 미얀마관세청 (Myanmar Customs Department) 웹사이트 또는 HS Code Book을 통해서 HS Code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2** 미얀마 내 ASEAN, FTA 특혜관세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미얀마와 아세안 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2015년까지 아세안 국가들간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0%로 낮아질 예정이며, 또한 대한민국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무역품목을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나누어 일정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됩니다. 미얀마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될 예정입니다.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속서 1 및 2)<sup>1)</sup> 중 각 미얀마 관련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Q3** 관세 환급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미얀마 내에서도 관세 환급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계산상 오류 또는 부주의로 관세를 잘못 과세하였을 시 잘못 부과된 관세금액만큼 환급하며, 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관세가 부과된 시점에서 3개월 이내로 관세청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해양관세법(The Sea Customs Act) 제 40조). 두 번째 관세 환급 정책은 HS Code 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을 미얀마 내로 수입할 시 관세청은

1) 부속서 속서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asean/1/kor/17.pdf](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asean/1/kor/17.pdf)

부속서 속서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asean/1/kor/19.pdf](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asean/1/kor/19.pdf)

수입된 상품에 대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예치금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한 관세를 차감한 후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환급세제(Drawback)정책에 따라서 타구에서 수입된 상품이 다시 타구으로 재수출할 경우 수입 시 과세된 관세의 8분의 7만큼의 관세를 환급합니다(해양관세법 제 42조).

**Q4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받아 미얀마에서 임가공하여 다시 수출할 경우 미얀마에서의 관세가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Cutting, making and packaging (이하 “CMP” 로 명칭)의 경우에는 무관수입이므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복 제작을 위한 원재료 수입 또는 그와 비슷한 공정을 하는 원재료 수입 또한 CMP 제도를 통해 무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sup>2)</sup>

---

2) Export / Import procedure by Directorate of Trade para 8. July 1998.

## 5 원천징수세

**Q1** 대금 지급(사업자의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제외) 시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세는 별도의 세금이 아니라 미래에 부과될 소득세를 대금지급 거래시점에 대금지급자가 대금 수령자를 위하여 선(先)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원천징수세는 (i) 이자소득, (ii) 로열티 및 라이선스·상표·특허권 등의 사용료, (iii)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에 의한 계약 대금, (v) 외국사업가, 외국기업에 대한 대금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각 세율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에 의해 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d)~(e)).

**Q2** 원천징수 세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대금 지급의 유형 및 소득 수령자에 따른 각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거래(대금 지급)	소득 수령자에 따른 세율	
	거주 국민 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
이자	-	15% (10% <sup>3)</sup> )**
면허, 상표, 특허권 등의 사용을 위해 지불된 로열티	15%	20% (10% 또는 15% <sup>4)</sup> )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에 의한 계약 대금	2%	3.5%
외국사업가, 외국기업에 대한 대금	2%	3.5%

\* 배당금 지급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양괄호 '( )' 안에 비율은 한구미안마조세협약에 따른 상한 비율입니다.

3) 한구미안마조세협약 제11조 제2항 참조

4) 한구미안마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참조

가. 특허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원천징수 의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미얀마 내에 소재하는 회사가 비거주 외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 외국인이 미얀마 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회사가 서비스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소득세(비거주 외국인의 서비스 소득에 대한 소득세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실무는 이자 송금 및 로열티 송금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기존에는 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송금이 제한되었으나, 최근 외화송금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어, 원천징수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지정 외국환은행 등을 통하여 직접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6 인지세

### Q1 인지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미얀마 인지세법은 1899년에 제정되었고, 그 후 수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미얀마 내에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문서 또는 증서(회사 정관, 회사설립계약, 주식양수도 관련, 임대계약, 각종 계약서 등을 포함)를 체결하는 자는 체결 이전 또는 체결하는 시점에<sup>5)</sup> 인지세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한편, 2014년도 1분기까지만 해도 인지세 납부에 관한 구세청 내부 정책이 일관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각 세무서마다 인지세 징수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세청에 따르면, 2014년 3월 수정인지세법의 공포 이후 각 세무서의 조세 징수관에게 “인지세법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적극적으로 인지세를 징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업무지침이 있었고 그 이후 인지세법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지세 부과 대상 항목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거래(특히 문서 체결시)가 인지세 부과 대상 거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Q2 인지세는 언제 납부하는 것이지요?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계약 등 체결 이전 또는 체결하는 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sup>6)</sup> 예외적으로 해외에 계약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 후 최종 서명본 계약서를 해외로부터 송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증빙을 첨부해서 관할 타운쉽 인지세 담당구(Township Stamp Duty Office)에 제출해서 인지세를 납부하고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5) 인지세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시점까지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세청은 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 인지세액의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한편, 타운쉽인지세담당구에 따라 계약 등 체결 이후 수일 이내에만 인지를 납부하면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개별 공무원의 재량에 따른 것일 뿐 법률적으로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Q3 인지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요 인지세 납부 대상 법률문서와 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법률문서	인지세율
1	임대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 : 연 평균 임대료의 0.5%</li> <li>• 3년 초과 기간 : 연 평균 임대료의 2.0%</li> <li>• 10년 초과 : 연 평균 임대료의 2.0%</li> <li>• 영구 장기임대차: 첫 50년 임대료의 1/5의 2.0%</li> <li>•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의 2.0% 추가됨</li> </ul>
2	시공계약, 서비스계약 등 계약금액이 있는 용역계약	계약금액의 1%(최대 150,000짜트 상한)
3	합작계약	계약금액의 1%(최대150,000짜트 상한)
4	대출계약	대출금액의 0.5%
5	근로계약	300 짜트
6	주식배정신고서(Form 6)	600 짜트
7	정관(Memorandum/Article)	165,000 짜트

## 6 기타

**Q1** 미얀마에서 외국 법인들이 부담하는 조세 의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얀마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조세의 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담당기관	과세 표준
법인세	국세청	총 수익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
상업세	국세청	미얀마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
원천징수세	국세청	(i) 직원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ii) 이자소득, (iii) 로열티 및 라이선스·상표·특허권 등의 사용료, (iv) 국가 기관, 개발 위원회 협동조합이 발주한 프로젝트의 대금, (v) 위 국가 기관이 거주 외국기업에 발주한 프로젝트 대금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각각의 세율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에 의해 징수
인지세	국세청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문서 또는 증서(회사 정관, 회사설립계약, 주식양수도 관련, 임대차계약, 각종 계약서 등을 포함)를 체결 시 과세
관세	관세국	미얀마에 반입하거나 미얀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과세

다만, 구체적인 사업 영역에 따라 추가적인 조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 당국 및 조세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Q2 주요 조세별로 신고 및 납부기간이 궁금합니다.

각 조세별로 신고의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신고 의무 사항	기한
<b>(1) 법인세 관련 (Income Tax Return)</b>	
법인세 분기별 계산, 납부 및 신고	매 분기말 이후 10일 이내
법인세 연간 계산, 납부 및 신고	매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확정 신고	매년 6월 30일 이전
<b>(2) 상업세 관련 (Commercial Tax)</b>	
상업세 등록 및 갱신	영업개시 이전 등록 및 매년 갱신 필요
상업세 계산 및 납부	매월 말 이후 10일 이내
상업세 신고	매 분기말 이후 1월 이내
<b>(3) 원천징수세 관련 (Withholding Tax Return)</b>	
직원급여의 월별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 납부 및 신고	원천징수 이후 7일 이내
직원급여의 연간 소득세 계산, 납부 및 신고	매년 6월 30일 이전
기타 원천징수 대상 거래(이자송금, 거래대금 해외송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액 계산 및 납부	원천징수 이후 7일 이내
<b>(4) 인지세 관련 (Stamp Duty)</b>	
인지세 첨부 대상 서류 작성시	법률문서 서명/체결 이전에 인지세 납부

## Q3 구체적인 세금문의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세청의 공식 민원실(Public Center, 양곤에 위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4 미얀마투자법 또는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투자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어떤 조세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① 미얀마투자법에 따른 조세 혜택**

미얀마투자법에 따르면, 조세 면제와 관련하여, 투자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가장 저개발된(least-developed) 지역을 제(1)구역, 중간 수준(moderately developed)으로 개발된 지역을 제(2)구역, 적절한 수준(adequately developed)으로 개발된 지역을 제(3)구역으로 지정하는 공고를 공표하여야 하고, 제(1)구역에 대한 투자사업에는 사업 개시연도부터 연속하여 7년간, 제(2)구역에 대한 투자사업에는 5년간, 제(3)구역에 대한 투자사업에는 3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미얀마투자법 제75조 (a)항). 그리고 소득세 면제 혜택은 투자위원회가 투자촉진 사업분야로 지정하여 공고로 공표한 분야에만 부여됩니다(미얀마투자법 제75조 (c)항). 제(1)구역에서 투자사업을 하더라도 투자위원회가 공고로 정한 투자촉진 사업분야로 지정되지 않으면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위 공표는 현재까지 공표되지는 않았는데 관련 공무원에 따르면 2017년 초에 공표될 것이라 합니다.

투자자가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신청한 경우 투자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심사한 후 관세 및 기타 내구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미얀마투자법 제76조).

-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고 투자사업의 건설기간 또는 준비기간 동안 실제로 필요하여 수입되며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기구, 기계부속품, 부품, 건설 자재에 부과되는 관세 및/또는 기타 내구세의 면제 또는 감면
- 수출용 제품 생산 목적의 수출지향적 투자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원재료 및 반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또는 기타 내구세의 면제 또는 감면
- 수입된 원재료 및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된 제품의 물량에 따라, 해당 수출용 제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 및 반제품에 부과되었던 관세 및/또는 기타 내구세의 환급(reimbursement)

- 허가기간 동안 원래의 투자사업이 확대되어 투자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투자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고 확대된 사업의 수행에 실제로 필요하여 수입되며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기구, 기계부속품, 부품, 건설 자재에 부과되는 관세 및/또는 기타 내구세의 면제 또는 감면

투자자가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신청한 경우 투자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미얀마투자법 제78조).

- 투자허가 또는 양여허가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사업으로부터 취득한 수익을 1년 이내에 해당 투자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종류의 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수익(재투자된 금액 상당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건물 및 자본재에 대하여, 규정된 사용연수보다 짧은 기간으로 사용연수를 정하여 상업적 생산 개시연도부터 상각을 시작하여 산정된 감가상각액을 법인세 사정(income tax assessment) 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권리
- 연방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하여 연방 내에서 수행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투자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권리

## ②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른 조세 혜택

미얀마 특별경제구역법은 투자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5년 간의 순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용(특별경제구역법 관련 조항)
Free Zone 투자자 Free Zone Business 투자자	첫 7년 법인세 100% 면제(제32조(a)항) 두 번째 5년 법인세 50% 면제(제32조(c)항) 세 번째 5년 재투자분의 50% 면제(제32조(d)항)
Promotion Zone 투자자 기타경제구역 투자자	첫 5년 법인세 100% 면제(제32조(b)항) 두 번째 5년 법인세 50% 면제(제32조(c)항) 세 번째 5년 재투자분의 50% 면제(제32조(d)항)
경제특구 개발자(Developer)	첫 8년 법인세 100% 면제(제40조(a)항) 두 번째 5년 법인세 50% 면제(제40조(b)항) 세 번째 5년 재투자분의 50% 면제(제40조(c)항)

한편, 미얀마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르면 투자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업세/내국세 및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용
Free Zone	다음 물품수입에 대한 상업세/내국세 및 관세 면제(제44조 (b)항 및 (c)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w materials for production</li> <li>• machinery instrument and necessary spare parts for production</li> <li>• construction materials and motor vehicles for building factory, warehouse and own office</li> <li>• trading goods, consignment goods, motor vehicles and other material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business for free-tax wholesale trading, export trading and services of provision and transportation</li> </ul>
Promotion Zone	다음 물품 수입에 대한 첫 5년간 상업세/내국세 및 관세 100% 면제, 다음 5년간 상업세/내국세 및 관세 50% 면제(제44조 (d)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quipment and instrument not for sale and their required spare parts</li> <li>• construction materials for factory, warehouse and own office</li> <li>• motor vehicles and other material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business</li> </ul>
경제특구 개발자 (Developer)	다음 물품 수입에 대한 상업세/내국세 및 관세 면제(제44조 (a)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struction materials for the infrastructures and own offices</li> <li>• machine instruments; machinery; motor vehicles for work and work materials</li> </ul>

또한, 미얀마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Promotion Zone의 투자자는 원재료 수입시에 상업세/내국세 및 관세를 납부하고, 동 원재료를 투입하여 생산한 완제품 혹은 반제품을 수출할 때에 동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a)항 및 (b)항). 이에 비해 Free Zone 투자자 및 경제특구 개발자(Developer)는 수입한 기계, 장비, 도구, 차량 등을 경제특구 밖으로 유출시킬 수 없고, 예외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면제된 상업세/내국세 및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특별경제구역법 제46조 (b)항).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내국세가 면제됩니다(특별경제구역법 제50조).

### Q5 가산세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항목	가산세
소득세	① 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 확정세액의 10%의 가산세. ② 과소예납의 경우 : 과소납부액의 10%의 가산세. ③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세액의 10%의 가산세
상업세	① 사업자등록(Commercial Tax Registration)을 하지 않은 경우(10%) ② 사업 개시 통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10%) ③ 규정된 기간(월, 분기, 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총 30%) ④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10%), 납세에 대한 조사 출두 통지 준수를 못한 경우(10%) ⑤ 정해진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확정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10%) ⑥ 매출 관련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해당 상업세의 10%) ⑦ 매출 관련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해당 상업세의 100%)
인지세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증서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인지세의 10배 부과

### Q6 미얀마에서 과실송금을 할 수 있는지 및 이에 대한 관련 규제를 알고 싶습니다.

미얀마투자법에 따른 투자자는 다음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미얀마중앙은행의 자본금 계정 규정(capital account rules)에 따른 자본금
- 미얀마투자법에 따른 투자와 관련한 수익, 자본이익(capital gains), 배당금, 로열티, 저작권료, 라이선스료, 기술지원 및 경영관리 수수료, 지분 및 기타 소득
- 투자 및 투자와 관련하여 소유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청산하여 수취한 대금
- 대출계약을 포함한 계약상 지급된 대금
- 투자관련 분쟁의 해결에 따라 수취한 승소금
- 투자 또는 자산의 수용이나 몰수에 따른 보상금 및 기타 수령금
- 연방 내에 적법하게 고용된 외국인 직원의 소득 및 기타 보수



송금의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른데, 배당금 송금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외국환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통상적으로 회계감사보고서(또는 감사인의 확인서), 재무제표, 조세완납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MIC의 승인서, 외국환거래 신청서 등입니다. 다만, 최근 송금규제가 완화되고 있어서 보다 수월하게 송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IC의 승인을 받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도 배당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위의 절차에서 MIC의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제외하고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 **Q7**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미얀마 내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조사의 강도는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세청의 (i) 세수의 확보 및 공평한 조세관행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방조세법, 수정 소득세법, 수정 상업세법, 수정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 정비, (ii) 소득세와 관련하여 내구인의 미공개소득원에 대한 간주세율을 현실화, (iii) 상업세 신고 및 납부 태만에 따른 가산세 상향을 통하여 상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같이 적극적으로 조세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향후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별첨 1 상업세가 면제되는 재화

번호	상품 품목
1	정제되지 않은 쌀, 쌀, 겨, 정제되지 않은 겨, 걸썩질
2	밀가루
3	옥수수 및 다른 작물, 옥수수가루 및 다른 작물가루
4	콩, 완두콩, 콩가루
5	땅콩
6	참깨
7	겨자씨, 해바라기씨, 타마린드씨 (Tamarind seeds), 목화씨
8	야자기름
9	각종 목화
10	황마 및 섬유질
11	마늘, 양파
12	감자
13	카사바 식물(Cassava plants), 카사바 가루(Cassava powder)
14	향신료 (잎, 열매, 씨앗, 나무껍질), 조미료
15	각종 과일
16	야채
17	설탕, 사탕수수
18	뽕나무 잎
19	약용 식물 및 약초
20	기타 농업제품
21	장작, 대나무
22	동물, 생선, 새우
23	누에고치
24	정제된 및 정제되지 않은 사탕수수,
25	꿀, 밀랍
26	락 염료(Lac)
27	땅콩, 참깨, 목화씨, 쌀겨 등으로 만든 기름의 잔여물
28	비누의 원재료
29	표백물질
30	야자실, 코코넛 껍질로 만든 술
31	다엽 (Tea leave)
32	각종 도장
33	인장, 납봉

번호	상품 품목
34	슬레이트, 석필, 분필
35	소스
36	땅콩기름, 참깨기름, 해바라기기름, 식용 쌀겨 기름, 발효 콩 기름, 고체 오일
37	생선, 새우, 육류 (wet meat)
38	건조 생선 및 새우
39	식초에 절인 생선 및 새우
40	새우가루, 찢 생선
41	생선과 새우 등을 가공한 고부가치 제품
42	우유, 각종 우유 가루
43	고추, 고춧가루
44	울금, 울금가루
45	생강
46	생선 반죽
47	익은 타마린드 (Tamarind)
48	국기
49	구슬 (종교용)
50	자, 지우개, 연필깎기
51	부탄가스
52	식용이 아닌 코코넛 기름
53	닭, 오리 등의 알
54	호박, 수박, 캐슈 (cashew)의 씨
55	종교 의상
56	석유 잔재물 (Oil dregs)
57	소금
58	유액(Latex)
59	빈랑나무열매
60	비료
61	살충제
62	농기계 및 부품
63	각종 사료
64	동물, 생선, 새우용 의약품
65	교배육종 재료
66	태양광패널, 태양광전지 제어장치 및 변환기
67	엑스레이 등 의료 장비 (병원이 직접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함)
68	의료용 솜, 분대, 병원 복 등 (병원이 직접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함)

번호	상품 품목
69	특정 의약품
70	의약품 원료
71	대학교육용 서적 및 그 생산에 사용된 종이, 연필
72	연필 심
73	콘돔
74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무기류
75	화약 등
76	작물 씨앗 및 묘목
77	소방차, 구급차
78	특정 장소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하는 제품
79	외국 대사관 등에 공급한 재화 (상호조약이 있는 경우)
80	국방부 예산을 구입하는 군수 물자
81	임가공용역 제공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등
82	에너지부가 외국대사관, 유엔, 외교관에 제공하는 엔진 오일
83	기부금으로 제공되는 재화
84	여객기에 공급하는 연료
85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부품
86	기타 의회가 연방의 이익을 위하여 승인한 제품

## 별첨 2 상업세가 면제되는 서비스

번호	서비스 종류
1	개인의 소규모 주택임대업 (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제외)
2	주차장 운영업
3	생명보험업
4	소액금융업
5	의료업 (성형의료 제외)
6	교육업
7	화물운송업
8	직업소개업
9	투자 서비스
10	은행업
11	통관대행업
12	행사대행을 위한 기자재 등 임대업
13	임가공업(CMP)
14	장례업
15	아동탁아업
16	미얀마 전통 마사지 / 맹인 마사지 서비스
17	이사업
18	통행료수령 서비스 (Toll Fee Collection Services)
19	동물의료업 등 (Animal Healthcare and Maintenance Service)
20	공중화장실 사용료수령 서비스
21	국제 여객항공운송업 (여객용으로 제한)
22	예술 및 문화 관련 서비스
23	대중교통업(버스, 철도, 항만)
24	정부기관에 지급하는 라이선스 비용
25	국방부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출판업
26	외국 대사관 등에 대한 서비스 (상호조약이 있는 경우)
27	기부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28	기타 의회가 연방의 이익을 위하여 승인한 서비스
29	일부 정부기관 등에 제공하는 통신용역

### 별첨 3 특별재화 (Special Goods)

번호	특별상품 목록	세율
1	담배	상한 120%
2	잎담배 (Tobacco)	60%
3	황색종잎담배 (Virginia tobacco, cured)	60%
4	퀄런 (Cheroot)	60%
5	시가 (Cigars)	60%
6	파이프입담배	60%
7	빈랑나무 저작제 (Batel chewing preparation)	60%
8	각종 주류	상한 60%
9	각종 맥주	60%
10	각종 와인	상한 60%
11	티크 목재 및 티크사용 목재	25%
12	옥, 루비, 사파이어, 에머랄드, 다이아몬드, 보석용 원석	20%
13	옥, 루비, 사파이어, 에머랄드, 다이아몬드, 보석용 원석으로 만든 보석	5%
14	1800CC이상 Van(Double Cap 4 Door Pickup 제외), 세단형 승용차(Saloons), 세단차, 스테이션왜건(estate wagon), 쿠페	25%
15	가솔린, 디젤, 제트연료	5%
16	천연가스	8%



## 2016 미얀마 조세 FAQ

주 소 | JIPYONG MYANMAR / No.140/A, Than Lwin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연락처 | T. +95-1-510366 (대표번호)

이메일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

고세훈 수석변호사 (shko@jipyong.com)

미얀마팀 대표이메일 (myanmar@jipyong.com)

---

# 2016 미얀마 조세 FAQ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JIPYONG** 법무법인 지평